

No. 48994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Romania**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Romania on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culture, education, science and sports. Pyongyang, 18 November 2010

Entry into force: *12 August 2011 by no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

Authentic texts: *Korean and Romanian*

Registration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6 September 2011*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et
Roumanie**

Accord entre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et le Gouvernement de la Roumanie relatif à la coopération dans les domaines de la culture, de l'éducation, de la science et des sports. Pyongyang, 18 novembre 2010

Entrée en vigueur : *12 août 2011 par notification, conformément à l'article 17*

Textes authentiques : *coréen et roumain*

Enregistrement auprès du Secrétariat des Nations Unies :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26 septembre 20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로므니아 정부사이의 문화, 교육, 과학, 체육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로므니아 정부(이 아래부터는 《쌍방》이라고 한다)는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과 이해를 두터이 할것을 념원하면서 문화, 교육, 과학, 체육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쌍방은 자주권의 존중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두 나라사이에 문화분야에서의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조

쌍방은 과학 및 기술기관들과 과학연구기관들사이에 다음과 같은 협조사업을 장려한다.

- 1) 공동연구사업계획의 작성과 집행
- 2) 전문가, 대학교원들, 기술자들의 접촉과 래왕
- 3) 과학내용의 영화와 비데오테이프를 포함한 과학자료들과 출판물들, 과학연구성과의 교환
- 4) 해당 부문 기관들사이의 직접적인 협조에 관한 합의문건들의 채택

제3조

쌍방은 교육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교류와 협조를 장려한다.

- 1) 전공분야에서 강의와 연구사업실험을 위한 교원 및 전문가들의 교류
- 2) 각급 교육기관들사이의 직접적인 교류
- 3) 가능성에 따라 류학, 연구, 실습을 위한 교육장소와 장학금의 제공

- 4) 국가교육기관들에서 호상성에 기초하여 상대방 나라의 언어와 문학에 대한 교육의 실시와 그에 필요한 전문강좌조직, 강사들의 호상 초빙, 전문서적들과 출판물들의 제공, 상대방에서 조직하는 하기강습에 호상 참가와 협조
- 5) 대학생 및 학생들의 교류

제4조

쌍방은 문학예술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협조를 장려한다.

- 1) 작가, 작곡가, 미술가, 예술인, 독창가 및 독주가, 문학예술부문 전문가들과 인사들의 교류
- 2) 상대방 나라의 령토에서 상업적목적을 포함한 문학예술행사들(미술전시회, 영화상영, 라디오 및 TV프로방영, 연극, 음악무용 축전 등)의 조직
- 3) 도서관, 박물관, 기타 문화기관들사이에 예술출판물, 영화, 서적, 정기간행물, 음악특음테이프, 디스크교환과 기증
- 4) 호상성에 기초하여 상대방 나라의 대표적인 과학 및 문학예술 서적들과 작품들의 번역 및 출판
- 5) 문화행사들(전시회, 토론회 등)의 공동조직

제5조

쌍방은 각기 자기 나라에서 조직하는 민족적 및 국제적인 성격의 대회, 회의, 예술축전과 기타 행사들에 상대방의 과학, 교육, 문학예술분야의 인사들을 초청하고 참가시키는것을 방조한다.

제6조

쌍방은 유네스코를 비롯한 문화분야의 국제기구와 국제회의들에서 자기 나라 대표들과 대표단들사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7조

쌍방은 창작동맹들(작가, 건축가, 미술가, 작곡가, 음악가, 연구인, 영화인, 사진사 등) 사이에 계획서, 의정서와 기타 실무문건들을 체결하며 그 리행을 위한 협조를 장려한다.

제8조

쌍방은 두 나라 국민들사이의 호상 리해를 더욱 두터이 하기 위하여 자기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에 관한 라디오 및 TV방송 프로그램의 교환, 전문가 및 기자들의 교류를 통하여 라디오 및 TV방송 분야에서의 협조를 장려한다.

제9조

쌍방은 영화필름과 영화일군교류, 전문잡지, 광고 및 출판물들의 교류와 상대방 나라에서 진행되는 국제영화축전참가를 통하여 영화기관들사이의 협조를 방조한다.

제10조

쌍방은 두 나라 청년들사이에 친선과 리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행사들을 공동으로 조직하도록 방조한다.

제11조

쌍방은 체육교육 및 체육기관들사이에 직접적인 합의에 따라 협조를 발전시켜나가도록 방조한다.

제12조

쌍방은 두 나라 통신사와 기자동맹, 출판보도분야의 전문가들사이의 협조와 태왕을 장려한다.

제13조

쌍방은 이 협정의 리행을 위하여 정부 또는 기관들 사이에 교류와 협조에 관한 계획서들을 주기적으로 체결할수 있다.

쌍방은 또한 이 협정의 리행에 관계하는 성, 기관들의 대표들을 지명하여 공동위원회 회의를 진행할수 있다. 공동위원회는 쌍방이 합의하는 기간의 교류계획서들을 체결하고 그 리행정형을 심의하기 위하여 료번으로 평양과 부쿠레슈띠에서 회의를 진행한다.

제14조

이 협정과 그에 따라 체결되는 계획서들의 리행과 관련한 비용은 각기 자기 나라의 법에 따라 부담한다.

제15조

이 협정의 해석과 리행문제들은 외교적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6조

이 협정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될수 있다.

제17조

이 협정은 쌍방이 각각 자기 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국내법적절차를 완료하였다는것을 호상 통지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8조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쌍방중 어느 일방이 외교적경로를 통하여 협정만기 6개월전에 서면으로 이 협정을 폐기할때 대하여 통지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5년간씩 연장된다.

이 협정이 폐기되는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작성조인되었으나 완전히 리행하지 못한 모든 교류계획서, 합의서와 기타 문건들은 이미 합의된 전기간 효력을 가진다.